



제1559호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7 9 4 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1 8 0 0 호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4
○ 공	고 제 1 8 1 5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99
○ 공	고 제 1 8 2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103
○ 공	고 제 1 8 2 3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천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108
○ 공	고 제 1 8 2 8 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 예고		110

고 시

○ 고	시 제 1 4 1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15
○ 고	시 제 1 4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16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94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 일원의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5. 21.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0월 9월 7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 일원
3. 사업 시행자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공고내용 : 재결서정본 송달

재결일 : 2020. 5. 21.

5.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21. (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8392)
7.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8.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최*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아파트)	
2	이*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7번길 **, *동 ***호 (구월동, **맨션)	
3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15번길 **, *동 ***호(구월동, **빌라)	
4	이*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84번길 **(구월동)	
5	박*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24번길 12-*, *동 ***호 (구월동, **맨션)	
6	김*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22-*, *동 ***호 (구월동, **빌라)	
7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 30-*(구월동)	
8	김*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84번길 ** (구월동), ***호	
9	김*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6번길 *, *동 ***호 (간석동, **빌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880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남동구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3.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무 과
4.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5.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경관과
6.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영개발과

2020년 9월 7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5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19
■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과)		25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49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경관과)		69
■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영개발과)		99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7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공개동의서 서식 신설 (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추가)
- 소송사건의 당사자 명칭을 명확히 함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안 제3조제1항)
- 고문변호사 위촉 등 현황 공개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0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발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를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를”을 “구 또는 구청장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를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별표에”를 각각 “별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인낙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에”를 “별표를”로 한다.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제2조제3항 관련)

승 낙 서

변 호 사 ○ ○ ○

본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청 럽 서 약 서

나는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남동구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용,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전통보 및 자진 사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로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u>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규정함</u> ----- ---
제2조(위촉) ①·② (생략) 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승낙서 및 청렴서약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승낙서, 청렴서약서</u> <u>및 정보공개동의서</u> -----.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생략) 2. <u>구</u>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②·③ (생략)	제3조(직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u>구 또는 구청장을</u> ----- -----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3회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임기) ① ----- ----- <u>세 차례만</u>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u>구청장이</u>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u>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u> 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u>구청장은</u> ----- ----- ----- <u>대하여 별지 제2호서</u> <u>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u> ----- -----.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① 고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① -

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1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지급하
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단,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
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
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
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요
소송사건의 경우 2,000만원 범
위 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소송물가
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
급할 수 있다.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
6%, 60% 이상 80% 미만 승소
시 소송물가액의 0.8%, 80%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
를 지급한다.

----- 별표를 -----.

-----.

② -----

----- 별표를 ---
-----.

③ -----

----- 범
위-----

-----.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
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
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
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
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
트를 지급한다.

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 화해 및
조정으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⑦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
른다.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
원)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
준은 별표와 같다.

④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
장은 소송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2. ----- 인낙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
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별표를 ---
-----.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
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남동구 조례·규칙심
의회 운영 규칙」-----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필요-----
-----.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u>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u>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 녕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발췌)

- (공개내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공개하여 소송 몰아주기에 대한 외부통제 유도
 - 관련 규정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기준·절차·위촉계획 등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 소송대리 현황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 ※ 일정기간 동안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계약체결시 사전에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
- (공개장소)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소송현황 정보를 열람·검색이 용이하도록 공개
 - 소송현황 관련 메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 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일원적으로 공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8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표창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안 제1조
-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정비 : 안 제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해당없음”

남동구 조례 제 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표창 조례의 개정)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양양”을 “드높임”으로 한다.

제2조(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양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남동구 표창 조례(제1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u>양양</u> 및 구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 ----- <u>드높임</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2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u>사기양양</u> 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반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	제1조(목적) ----- ----- ----- ----- <u>사기를 드높이기</u> ----- ----- ----- <u>필요한 사항을</u> <u>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 녕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3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
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1. 3. 1. ~ 2026. 2. 28. (5년)
- 위탁내용 : 남동구청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 입·퇴소관리 및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
 -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 종사자 임면사항
 - 그 밖에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 현재 위탁기관 : 개인(원장 조연화)
 - 기 간 : 2019. 3. 1. ~ 2021. 2. 28. (2년)
- 사 업 비 : 505,910천원(2020년)

☐ 동의사항 :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사항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

- 1) 인건비
- 2) 교재교구비
- 3) 냉난방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남동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부담

가) 인건비 : 489,910천원

* 보육교직원의 80% 지원 / 조리사, 서무 100% 지원 (총 15명 지원)

나) 교재교구비 : 연 8,000천원

다) 냉난방비 : 연 8,000천원

▶ 소요예산 : 연간 약 505,910천원

나. 추계 결과

- 1) 남동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 연 505,910천원

* 2021년 이후 인건비 상승 예산액 연 20,000천원 반영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05,910	525,910	545,910	565,910	585,910	2,729,550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505,910	525,910	545,910	565,910	585,910	2,729,5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05,910	525,910	545,910	565,910	585,910	2,729,550
	지방세		505,910	525,910	545,910	565,910	585,910	2,729,55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함으로써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정하여
- ❖ 육아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방침

1.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용
2. 수탁희망자의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 운영자 선정
3. 위탁기준의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Ⅲ

남동구청어린이집 개요

○ 남동구청어린이집 기본현황

- 개 원 : 2001. 6. 1.
- 위 치 :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내)
- 시설현황

구 분	연면적	옥외놀이터	교실수	정 원	현원
증 축 후	1,006.98㎡	314.32㎡	13개	100명	89명

* 증축(2017) 전 : 652.98㎡, 실외놀이터 81㎡ / 정원 82명

- 정(현) 원 : 100명 (89명)
- 교직원수 : 총22명

○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2. 28. (2년)
- 위 탁 자 : 개인[조연화(57.01.30.)]
- 위탁운영비 : 505,910천원(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지원)

합 계	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비고
505,910천원	489,910천원	8,000천원	8,000천원	

* 인건비 지급 기준 : 보육교사-인건비의 80%, 조리사 등 - 100%

Ⅳ

위탁운영자 선정 세부추진계획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기 간 : 2021. 3. 1. ~ 2026. 2. 28.

□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공개경쟁**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법인·단체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따라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함

※ 공통 : 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단,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

○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단, 고용 원장은 신청가능)
- 위탁운영자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 할 수 있음

□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를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붙임 4]

- 「2020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름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위탁해지에 따른 변경위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함)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1순위), 원장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함
-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IV

추진일정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제출 [붙임1]

- 제 출 일 :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 임시회 회기 : 9. 8.(화) ~ 9. 11.(금)
 - 부의안건 제출 : 2020. 8. 19.한 (→ 기획예산과)
- 주요내용 :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붙임2]

- 기 간 : 2020. 9. 15.(화) ~ 2020. 10. 6.(화)
- 공 고 : 구보, 구청 및 각 동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문 게재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 간 : 2020. 10. 7.(수) ~ 2020. 10. 14.(수)
- 접 수 처 : 총무과(총무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붙임3]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0. 10월중

□ 위탁계약 체결 : 2020. 11월중

V**행정사항**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 : 2020. 9. 15.

○ 대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 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붙임 1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1. 3. 1. ~ 2026. 2. 28. (5년)
- 위탁내용 : 남동구청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 입·퇴소관리 및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
 -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 종사자 임면사항
 - 그 밖에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 현재 위탁기관 : 개인(원장 조연화)
 - 기 간 : 2019. 3. 1. ~ 2021. 2. 28. (2년)
- 사 업 비 : 505,910천원(2020년)

☐ 동의사항 :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사항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붙임 2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모집 공고문

남동구 공고 제 2020 - 호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현황

(단위:㎡/명)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정원	비 고
남동구청어린이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1,006.98	100	위탁해지일 (2021.2.28.)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변경위탁)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0. 9. 15.(화) ~ 2020. 10. 6.(화)

○ 접수기간 : 2020. 10. 7.(수) ~ 2020. 10. 14.(수)

- 접수장소 : 남동구청 5층 총무과(총무팀)
- 접수방법 : 신청인(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붙임2] 의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 ①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1부, 사본14부)
 - ②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약5분 분량)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4. 신청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해 신청
 - 개 인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 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원장은 신청가능)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안내,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 : 「2020 보육사업 안내」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8.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원장의 전문성(2순위), 운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 시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 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의 교직원(대표자, 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15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단,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인 경우 제외)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총무과(☎453 - 2183)에 문의

붙임 3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 서류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	○	(별지 서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	
3. 원장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원장내정자
5.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및 관련학과)	○	○	○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7.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별지 서식)
8. 법인·단체 소개서	○	○		
9. 법인의 정관,登記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登記부등본 제외
10.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1.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12. 2018년~2019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보육관련 사업
13. 2017년~2018년 법인(단체)총괄결산서 2018년~2019년 법인(단체)총괄예산서	○	○		보육관련 사업
1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0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	○	○	(별지 서식)
15. 보육 관련 운영실적 및 포상 등 증빙서류 (신문방송보도,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	○	○	보육관련 사업
16. 재정상태 및 요약서	○	○	○	(별지 서식)
17. 건물 :登記부등본 및 아래의 서류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기타 : 세목별과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임대차계약서 : 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	○	-개인 (기혼자 부부재산 반영, 배우자 50% 인정)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18. 토지 :登記부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	○	○	※ 서류발급 기준일 :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함 ※ 금융재산·부채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기준발행 ※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제출
19. 금융재산 및 부채(공고일 전일 현재잔액증명)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빙서류(배우자 포함 필수) →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	
20.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원본지참)	○	○	○	
21. 인감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용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2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	○	(별지 서식)
2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2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대표자, 원장내정자

*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 조회서)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발행해야 함.

붙임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 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참고 1**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

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51조의2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40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에 따른 감면규정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 2020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 정비(안 제4조)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3조)
-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8조)
-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0조, 제14조, 제16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78조의3, 제75조의2, 제177조, 제1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감면율”은 100분의 100”을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32조에”를 “제32조를”로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에”를 “「조세특례제한법」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 포함한다)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공제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

----- 2022년 12월 31일-----.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경감율은 100분의 50-----.

<삭 제>

제9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은 「지방세
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 (생 략)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
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
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
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
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
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
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
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

----제32조를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
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
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감면기간 세입감소분 추계 결과

- 감면기간: 2021년 ~2022년 (2년)
- 감면내용: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감면추계: 2백만원

※ 감면추계는 2018~2019년 연평균액 산출, 그 외 조항은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김순철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제78조의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 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 ⑮ (생략)

[본조신설 2020. 1. 15.]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41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4.28. 개정)」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6.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 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법령 및 市 조례에 따라 용어 등 일치 정비(안 제2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행령에 따른 권한 외 조항 삭제 (안 제7조)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 시·도지사의 권한(시행령 제21조)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정비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추가(안 별표 6)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의 징수방법 수정(안 별표 7)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 동

구 조 례 제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에서”를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구조안전확인서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에”를 “제9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를 “제16조에도”로, “표시기간에”를 “표시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명에서 5명”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조례에”를 “조례를”로, “이를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위탁자의”를 “수탁자의”로, “위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수탁자에게 공공게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공공게시시설”로, “수탁기관에”를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관리자”를 “해당 광고물 등의 관리자”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에도”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점검 수탁자”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32조 후단 중 “관리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6, 별표 7,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파. 벽보(50매)	5,000원	
하. 전단(500매)	5,000원	
거. 입간판	4,000원	
너. 전자게시대(광고 1건당)	6,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29조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제21조제4항 관련)

수 탁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현행	개정안
<u>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u>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제외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	<u>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7조(표시방법 완화)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에 의한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그 구역 범위 또는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지정 고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②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

-----.

③ -----
구조안전확인서류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시된 지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법 제3조제4항 및 영 제21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나. (생략)

2.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생략)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 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제11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

1. ----- 제9조에
도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제16조에도 -----

----- 표시
기간에도 -----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 제2항제7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협의회) ① -----
----- 조례로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 7. (생략)

③ (생략)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

1. (현행과 같음)

2. -----

----- 이하-----

-----.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 3명 이상 5명 이하-----

-----.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략)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① ~ ③ (생략)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_____

따른다.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작 제>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를 구청장

⑤ (생략)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탁받은 자-----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수탁자의 -----

----- 수탁자에게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한 차례만 -----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⑨ (생략)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사업소장, 동장(이하 이 조에서“동장 등”이라 한다)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현수

⑧ 수탁자-----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
-- 수탁자에게 공공게시시설 -

-----.

② ----- 수탁자를-----

-----.

③ -----

----- 공공게시시설 -----

수탁자에게 -----
-----.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

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이하 조에서 “주민 등”이라 한다)에서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소에 제출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봉사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여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소 여건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 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 범위-----

-----.

② -----

----- 행정복지
센터 -----

-----.

----- 행정복지센터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광고물 등의 관리자 --
-----.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⑦ (생략)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32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계

----- 제3항에
도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7항에
도 -----

--.

제3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 -----

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다.

 -----.

 ----- 수탁자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42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17. 3. 18.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어시장’의 정의 : (안 제2조)
- 어시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23조(규칙)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포구 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
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점포, 편의시설 및 건물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 구성된 어시장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
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 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구청장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실 내에 갖추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도시건설국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아. (생략)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카.

2.~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815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9.8. ~ 2020.9.22.
3. 공고대상 : 이륜차 11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33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27. ○ 견인일 : 2020.8.24.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구월동 201-59 월드타운 앞
	2020-0034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28. ○ 견인일 : 2020.8.24.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 5-12 뽕밭 앞
	2020-0036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3. ○ 견인일 : 2020.8.24.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고잔동 698-6 무진ENG 건너편 (127B-7L)
	2020-003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3. ○ 견인일 : 2020.8.3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고잔동 702-10 한성정밀 앞 (132B-5L)
	2020-003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7. ○ 견인일 : 2020.8.26.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89-2 합기도장 입구 앞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37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11.
- 견인일 : 2020.9.1.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서창남로17 서창베라체 지하주차장 A96 옆

2020-0038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12.
- 견인일 : 2020.8.31.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37-232 부영빌라 앞

2020-0038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13.
- 견인일 : 2020.9.1.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68-1 백합빌라 2,3동 사이

2020-00387 (2대)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13.
- 견인일 : 2020.9.2.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73-8 해마루플러스 앞 인도변

2020-0039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18.
- 견인일 : 2020.9.7.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320-16 앞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0-0033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동 201-59 월드타운 앞	2020.8.24.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	2020-0034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 5-12 별발 앞	2020.8.24.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3	2020-0036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고잔동 698-6 무진ENG 건너편 (127B-7L)	2020.8.24.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4	2020-003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고잔동 702-10 한성정밀 앞 (132B-5L)	2020.8.31.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0-0037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89-2 합기도장 입구 앞	2020.8.26.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6	2020-0037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서창남로17 서창베라체 지하주차장 A96 옆	2020.9.1.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7	2020-0038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37-232 부영빌라 앞	2020.8.31.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0-0038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68-1 백합빌라 2,3동 사이	2020.9.1.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9	2020-00387	번호판없음 (2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73-8 해마루플러스 앞 인도변	2020.9.2.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10	2020-0039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320-16 앞	2020.9.7.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8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314번지 일원 소로2-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L=8m, B=169m, A=1,659.0m²
- 변경: L=8m, B=169m, A=1,682.9m²
(※ 도시계획선에 맞춘 분할로 인한 면적변경)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0.04.17. ~ 2022.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용 지 조 서

이 단 조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구상 면적 (m ²)	편입면적			잔여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잔동	296-22	묘	78.0	78.0		78.0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6 ○○○			
									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			
1	고잔동	296-22	묘	78.0	78.0		78.0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6 ○○○			
									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			
2	고잔동	304-1	전	44.0	44.0		44.0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6 ○○○			
									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			
2	고잔동	304-1	전	44.0	44.0		44.0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6 ○○○			
									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			
3	고잔동	296-11	대	123.0	123.0		123.0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6 ○○○			
									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			
3	고잔동	296-11	대	123.0	123.0		123.0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6 ○○○			
									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			
4	고잔동	304	대	234.0		8.0	8.0	226	(주)○○	인천 남동구 수인로 ○○○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양평동지점)	
4	고잔동	304-5	대	8.0		8.0	8.0	0	(주)○○	인천 남동구 수인로 ○○○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양평동지점)	
5	고잔동	296-20	도	28.0		2.0	2.0	26	(주)○○	인천 남동구 수인로 ○○○			
5	고잔동	296-24	도	2.0		2.0	2.0	0	(주)○○	인천 남동구 수인로 ○○○			
6	고잔동	297-1	장	1,462.0		15.0	15.0	1,447	이○○	인천 남동구 고잔동 ○○○	농협은행(주)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청라시 티지점)	
6	고잔동	297-9	장	15.0		15.0	15.0	0	이○○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	농협은행(주)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청라시 티지점)	
7	고잔동	303	대	945.0		57.0	57.0	888	오○○	인천 남동구 고잔동 ○○○			
7	고잔동	303-1	대	57.0		57.0	57.0	0	오○○	인천 남동구 고잔동 ○○○			
8	고잔동	586-2	도	1,770.0	128.0	133.0	261.0	1,509	국유지	건설교통부			
8	고잔동	586-69	도	230.8	83.9	146.9	230.8	0	국유지	건설교통부			
8	고잔동	586-71	도	51.3	49.9	1.4	51.3	0	국유지	건설교통부			
9	고잔동	313-4	대	449.0	123.0	3.0	126.0	323	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2 ○○○			
9	고잔동	313-9	대	128.5	128.5		128.5	0	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2 ○○○			
10	고잔동	313-6	전	1,197.0	140.0	6.0	146.0	1,051	윤○○	인천 남구 고잔동 ○○○			
10	고잔동	313-11	전	118.0	118.0		118.0	0	윤○○	인천 남구 고잔동 ○○○			
10	고잔동	313-13	전	32.0	32.0		32.0	0	윤○○	인천 남구 고잔동 ○○○			

제1559호

남동구 구보

2020. 9. 10. 목요일

11	고잔동	314	묘	1,597.0	275.0	6.0	281.0	1,316	박○○	인천 서구 신현동 320-1 ○○○			
11	고잔동	314-1	묘	279.2	279.2		279.2	0	박○○	인천 서구 신현동 320-1 ○○○			
12	고잔동	315	대	291.0	132.0	2.0	134.0	157	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	고잔동	315-1	대	134.9	134.9		134.9	0	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	고잔동	312-16	대	215.0	215.0		215.0	0	(주)○○테크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로88번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지점)	
13	고잔동	312-16	대	215.0	215.0		215.0	0	(주)○○테크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로88번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지점)	
14	고잔동	317-3	대	149.0	149.0		149.0	0	최○○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			
14	고잔동	317-3	대	149.0	149.0		149.0	0	최○○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			
15	고잔동	312-9	대	130.0	1.0		1.0	129	장○○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15	고잔동	312-18	대	1.0	1.0		1.0	0	장○○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남동농협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한화지점)	
16	고잔동	312-14	도	58.9	6.0		6.0	53	국유지	건설교통부			
16	고잔동	312-19	도	6.4	6.4		6.4	0	국유지	건설교통부			
17	고잔동	311	창	5,066.0		13.0	13.0	5,053	임○○	인천 연수구 청량로106번길 ○○○			
17	고잔동	311-8	창	9.8		9.8	9.8	0	임○○	인천 연수구 청량로106번길 ○○○	유한킴벌리(주)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2	
											(주)한미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용현동 지점)	
											(주)디에이치엘코리아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9(염리동)	
합계					1,414.0	245.0	1,659.0						
					1,442.8	240.1	1,682.9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82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천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천공영주차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453-2682),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1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3. 사업규모

- A=887m²(주차대수: 55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월동	7-21	대	210.6	210.6	남동구				
2	구월동	7-24	차	676.4	676.4	남동구				
소 계				887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828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행정예고 및 목적

-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3. 행정예고의 대상

NO.	노상주차장 위치	주소	페이지	비고
1	산호마을 포스트아파트 앞	만수동 845-2	5	
2	대림하이츠빌라 앞	만수동 851	3	
합계	2개소		8면	

※ 사업 위치도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9. 9. ~ 2020. 9. 29.(21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0. 9. 9. ~ 2020. 9. 29.(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884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의견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주민의견수렴 위치도

- 주차구획선 삭제 예정지 : 만수동 851번지, 만수동 845-2번지 일원



- 의견 수렴 요청 위치



○ 현장사진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남 동 구 청 장

1. 신청인

가. 성 명 : 남동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6동)

2. 공사내용

가. 공 사 명 :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공정 : 유출관거 설치를 위한 수문설치(가물막이 포함)

나. 위 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대교 인접 해안 옹벽 앞 공유수면 (논현동 391-1번지 인접)

3.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0. 10. 31.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실시계획 승인일

가. 면 적 : 0.924㎡(간접점용, 유출관거 수문) ※ 일시점용 364㎡(가물막이)

나. 실시계획승인일 : 2020. 9. 5.

5.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사항 문의는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8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4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64 (고잔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0-12 (만수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0-12 (만수동)	2020.9.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0-14 (만수동)	2020.9.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6-16 (만수동)	2020.9.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49-7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71번길 39 (만수동)	2020.9.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68-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64 (고잔동)	20091116	고잔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0090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 64 기초구간에위치하여64를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0-12 (만수동, 그랑주택)	20091116	만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90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29번길 20-12 기초구간에위치하여20-12를건물번호 로부여	그랑 주택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49-7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71번길 41 (만수동)	20091116	하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90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하촌로71번길 41 기초구간에위치하여41을건물번호로 부여	